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 사 경 과

1993. 2. 4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문교사회위원회

나. 제출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1993년 1월 29일

○ 회부일자 : 1993년 1월 29일

다. 상정일자 : 제86회 임시회

○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 (1993. 2. 4)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가정복지국장 장 상 자)

가. 제 안 이 유

충청북도 장한여성大賞의 수상부문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심사위원회의 권한을 강화 부합치 않는 수상자 결정 방법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코자 함.

나. 주 요 골 자

○ 조례상 수상부문인 장한어머니, 장한며느리, 장한여인 등 3개 부문중 장한여인 부문의 규칙에 명시된 3개분야중 장한아내 분야를 조례 수상 부문에 장한아내 부문으로 추가.

○ 수상자 결정방법에 있어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개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김영만)

- 가. 장한여성 大賞 3개 수상부문(장한어머니, 장한며느리, 장한여인)중 장한여인 부분에 관한 규칙 내용중 장한아내 분야를 조례에 신설하여 4개 부문으로 하고, 장한여인 부문 3개분야(충복을 빛낸 여성, 지역사회 공헌이 뚜렷한 여성, 장한아내)중 장한아내 분야를 삭제하여 2개 분야로 조정하려는 것은 가정과 지역사회 봉사자를 명확히 구분하려는 것이고,
- 나. 부지사가 심사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심사위원회에서 수상자를 결정하는데 있어, 신증을 기하기 위하여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도지사가 결정토록 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별첨 수정안의 내용과 같음

6. 수정안의 요지

개 정 안	수 정 안
<p>제7조(수상자결정) ①수상자는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도 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을 결정한다.</p> <p>② 제3조 제4호의 부문에 대하여는 공적이 상이한 분야별로 심사위원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2명 이내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p>	<p>제7조(수상자결정) ① 도 지사가 각 부문별로 결정한다.</p> <p>②</p>

7. 심 사 결 과

○ 개정안에 의한 수정동의안 7인중 7인 찬성으로 가결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

9. 심사보고 첨부서류

- 충청북도 장한여성 대상 조례중개정조례(안) 1부.
- 신구조문 대비표 1부.
- 충청북도 장한여성 대상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1부.
- 수정안조문 대비표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증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한여성대상 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장한아내 부문

제7조 제1항중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로 부터 복수추천을 받아"를 "각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심사위원회의 심사후"로 하고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을 결정한다"를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결정한다"로 하며 동 조례 제2항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3명이내의"를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2명이내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p>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p> <p>제3조(수상부문) 여성대상의 수상 부문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장한 어머니 부문 2. 장한 며느리 부문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장한 여인 부문 <p>제7조(수상자 결정) ① 수상자는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을 결정한다.</p> <p>② 제3조 제3호의 부문에 대하여는 공적이 상이한 분야별로 심사위원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3명이내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p>	<p>(현행과 같음)</p> <p>제3조 (수상부문)</p> <p>.....</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장한 아내 부문 4. (현행 3호와 같음) <p>제7조(수상자결정) ①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 심사위원회의 심사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결정한다.</p> <p>② 제4호의</p> <p>.....</p> <p>..... 2명이내의...</p> <p>.....</p>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

제안년월일 : 1993. 2. 4

제안자 : 문교사회위원장

1. 수정이유

조례 제7조 (수상자 결정) 제 1항에 있어,

장한여성 大賞 수상자는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의 예심을 거쳐 전체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을 결정토록 되어 있으나, 수상 대상자가 없을 경우와 공적이 우수한 多數 대상자에도 수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2. 수정주요 골자

전체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을 결정한다.

→ 전체 심사위원회의 심사 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결정한다.

(案 제7조 1항)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案 제7조 제1항중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을 결정한다"중
"1명씩을" 삭제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p>충청북도장한여성대상조례</p> <p>제3조(수상부문) 여성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과 같다.</p> <p>1. 장한 어머니 부문</p> <p>2. 장한 며느리 부문</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3. 장한 여인 부문</p> <p>제7조(수상자결정) ①수상자는 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로부터 복수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1명씩을 결정한다.</p> <p>② 제3조 제3호의 부문에 대하여는 공적이 상이한 분야별로 심사위원회의 복수추천을 받아 3명이내의 범위내에서 도지사가 결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현행과 같음)</p> <p>제3조(수상부문)</p> <p>.....</p> <p>1.</p> <p>2.</p> <p>3. 장한 아내 부문</p> <p>4. (현행 3호와 같음)</p> <p>제7조(수상자결정) ①</p> <p>각 부문별로 심사위원회의예심을 거쳐 전체심사위원회의 심사후</p> <p>.....</p> <p>② 제4호의</p> <p>.....</p> <p>.....</p> <p>2명이내의</p> <p>.....</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과 같음)</p> <p>제3조(수상부문)</p>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안과 같음)</p> <p>제7조(수상자결정) ①.....</p> <p>.....</p> <p>.....도지사가 각 부문별로 결정한다.</p> <p>② (개정안과 같음)</p>